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

(이상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8 발의연월일: 2025. 01. 24.

발의의원: 이상기, 박경원, 김지훈(민),

김영실, 김상수, 이수련,

이진환, 원주영, 김지훈(국),

박은경, 전혜연, 이경숙,

박윤옥, 손정자

1. 제안 이유

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으로 농·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4조)
- 다.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,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 ~ 제7조)
- 라.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 ~ 제14조)
- 마. 보조금 지급 중지, 환수 및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5조 ~ 제16조)

-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- 한 한 번 경 : 덧붙임

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
- 2. "어업"이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.
- 3. "농민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- 4. "어민"이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 업인을 말한다.
- 5. "농어민 기회소득"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·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·어민(이하 "농어민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.

- 6. "지역화폐"란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급대상 등)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.
 - 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지급액에 대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남양주시(이하 "시"라한다)에 두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(법인은 제외한다)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1. 50세 미만의 농어민
 - 2.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·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
 - 3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

농어민

- 4. 「동물보호법」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「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
- 5. 「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인증받 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
- 6.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
- 7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
- 제6조(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
 - 2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- 3. 경기도와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
 - 4.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(성별 통계 포함)
 - 5.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
 - 6. 농어민 기회소득 지워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

- 제7조(지급 신청 등)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(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)를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 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주민등록등·초본(병역정보를 포함한다)
 - 2.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
 - 3.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
 - 4. 가족관계 증명서(해당자에 한정한다)
 - 5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정한다)
 - 6.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(외국인에 한정한다)
 - 7. 국내거소사실 증명서(외국인에 한정한다)
 - 8. 소득금액증명
 -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.
-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·면·동장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. 제8조(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

-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기회소득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1. 농어민 기회소득 현장심사위원회(이하 "현장심사위원회"라 한다): 읍·면·동별로 각각 설치한다. 다만, 읍·면·동 현장심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·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읍·면·동을 관할하는 현장심사위원회를 둘 수있다.
- 2.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(이하 "총괄심사위원회"라 한다): 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제9조(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기능) ① 현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
 - 2.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
 - ② 총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평가
 - 2.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
 - 3. 읍 면 동 현장심사위원회 활동 평가
- 제10조(현장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현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,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 - ② 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·면·동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

- 중에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, 위원은 관할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및 농어민 중에서 읍·면·동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1조(총괄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총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 - ② 총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・소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1.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
 - 2. 농어민단체, 소상공인단체,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

- 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

- 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 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- 4.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5조(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 - 1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
 - 2. 지급대상자의 사망,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,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
 - 3.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
 - 4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
 -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

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.

제16조(보조금의 신청 등)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」는 폐지한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 -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4조. 제5조1항, 제7조, 제8조, 제12조4항
- 나. 비용 발생 요인
 -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
 - 읍면동 현장신청 보조 인력 인건비
 - 위원회 운영

※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조례에 있는 항으로, 추가 비용 요소는 아니지만 비용 발생 요인임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농민기본소득→농어민기회소득으로 변경·확대
-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5 ~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
- 지급 대상 : 일반농어민 5,284명, 청년·귀·환경 농어민 1,092명
- 2025년 예산안 : 3,859,800천원

(도비 : 3,751,400천원, 시비 : 108,400천원)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총 소요액		5,352	5,352	5,352	5,352	5,352	5,352
농어민 기회소득	수혜금	5,136	5,136	5,136	5,136	5,136	5,136
	부대운영비	216	216	216	216	216	216

○ 2025년 총 소요 예상액 : 5,352,800천원

(도비 2,676,400천원, 시비 2,676,400천원)

- 수혜금(일반 농어민) 5,284명×월 5만원×12개월 : 3,170,400천원
- 수혜금(청년·귀·환경 농어민) 1,092명×월 15만원×12개월 : 1,965,600천원
- 부대운영비 : 216,800천원

인건비(읍면동 현장신청 보조 기간제) 12명×월 270만원×5개월 : 162,000천원 위원회 운영비(위원회 수당 및 행정경비) : 54,8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: 일반회계로 편성

○ 도 보조금 50%, 자체수입 50%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

천원)

구 분	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j.	세 출	5,352,800	5,352,800	5,352,800	5,352,800	5,352,800	5,352,800
농어민 기회소득 지원		5,136,000	5,136,000	5,136,000	5,136,000	5,136,000	5,136,000
부대운영비		216,800	216,800	216,800	216,800	216,800	216,800
재원 조달		5,352,800	5,352,800	5,352,800	5,352,800	5,352,800	26,764,000
	소 계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13,382,000
의존	보조금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13,382,000
재원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13,382,000
자체	지방세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2,676,400	13,382,000
수입	세외수입						

붙 임 관 련 법 령

●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수산인"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수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.
- 가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
- 「귀농어·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"귀농어업인"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 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 제19조(유기식품등의 인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
 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
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.
 <개정 2013. 3. 23., 2016. 12. 2.>
-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4조(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9. 8. 27., 2020. 3. 24.>
-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9. 8. 27., 2020. 3. 24.>
- ③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,

제조·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(이하 이 장에서 "인증기관"이라 한다)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,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, 제한, 심사 및 재심사, 인증 변경승인, 인증의 유효기간,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,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, 인증의 취소, 인증표시의 제거・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,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유기식품등"은 "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"으로 본다. <개정 2019. 8. 27., 2020. 3. 24.>
- ⑤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,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, 인증기관의 사후관리,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유기식품등"은 "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"으로, "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"은 "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"으로 본다.

- 「동물보호법」 제59조
- 제59조(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(이하 "농장동물"이라 한다)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라 한다)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주어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 -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(이하 "인증농장"이라 한다)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 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,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「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제4조(가축행복농장 인증) ① 도지사는 가축행복축산 증진에 이바지하고 가축이 사육기간에 기본적 생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·군수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장소에 대한실제 조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거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한다.
- ④ 가축행복농장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,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- 「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제4조(명품수산물의 인증) ① 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양식하여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명품수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.
- ②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식장 소재지 시장·군수에 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한다.
- ④ 경기도 명품수산물의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, 인증 절차,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